

낙농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대학교교수 박종수



자 조금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공감했던 낙농업계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낙농육우협회의 주관하에 임의자조금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동 임의자조금사업은 우유의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사업은 그 조성액의 한계로 인해 소비촉진활동도 공익적 광고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들의 참여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 왔다. 특히 임의 자조금제도의 시행초기인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전체 낙농가의 80%정도를 상회하는 낙농가가 동 제도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낙농가와 소수 유업체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무임편승자(free-rider)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거출금액도 과소하여 소비촉진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등 임의자조금제도의 한계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에 의무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낙농가들은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급기야 2006년 5월부터는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필자는 우리 낙농업의 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빠르게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축산단체와 낙농가 그리고 거출금의 수납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대의원 투표에 의해서 징수기로 결정된 자조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생산자단체인 협회는 원유의 집유업자나 원유의 가공업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함)에게 위탁하게 되며, 해당 수납기관은 징수된 자조금을 축산단체에 송금하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집유 및 유가공업자인 수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수납기관은 자조금의 징수업무가 비록 집유 및 유가공업부에 추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낙농산업을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자조금의 징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의 원활한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국내산 원유의 시장이 안정된다면, 그 이익이 낙농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낙농가는 물론 원유의 집유업자와 유가공업자 등을 포함한 낙농업의 전후방에 관련된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그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조성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활동자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독립적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이 그 자금을 조성한 낙농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조금에 대한 사용 용도도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홍보와 낙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조금조성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은 법의 취지에 따라 그 운용·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의 자조금이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즉,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홍보 및 광고와 PR사업,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사업 등에 장단기적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사용됨으로서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낙농자조금의 실질적 집행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게 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관리사무국의 자조금에 대한 업무집행은 낙농가의 매우 중요한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은 기존의 생산자단체와 업무의 유기적 협조

관계는 유지하되, 생산자단체가 갖는 본래의 업무와 자조금업무가 혼돈·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배제시킨다는 차원에서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축산법은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금액 내에서 축산발전기금을 대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조금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관리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낙농산업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도 가격 및 수급안정이나 방역사업 등과 같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자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다만 자조금제도도 많은 낙농가를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공익에 관계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자조금사업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협조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정책은 한국적 자조금제도의 바람직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은 어느 경우라도 감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정부의 철저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매 회계연도마다 사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대위원의 선출이 매 4년마다 실시되며, 4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낙농가는 자조금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조금사

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낙농가의 10분의 1이상 또는 전년 도말 기준 사육하는 젖소의 4분의 1이상을 사육하는 낙농가의 연서를 얻어 낙농단체에 자조금의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을 결정하는 대의원의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조금사업 추진의 지속성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자조금사업의 평가결과는 이 같은 자조금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년도의 자조금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조성·운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자조금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필자는 많은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낙농산업의 의무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의무자조금사업이 낙농산업의 현안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금사업은 낙농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낙농가 스스로도 참여하여 일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무자조금사업이 낙농가들의 산업에 대한 자부심과 응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부디 자조금사업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낙농자조활동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사)제천영양사협회장 곽동경



최 근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WTO/DDA농업협상과 낙농선진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과 혼합분유를 포함한 유사 유제품의 수입증가 그리고 웰빙을 트렌드로 하는 기능성 음료 등 대체 음료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낙농가들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도

낙농가 중심으로 낙농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하여 우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낙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낙농자조금 조성은 과거에는 60%의 농가 참여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낙농자조활동자금을 이용한 우수소